

# 제안 설명

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고령군  
(관광진흥과)

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.

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, 그리고 여러 의원님

평소 관광진흥과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, 협조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,

『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』에

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

- 고령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-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.

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~제3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재단의 설립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재단이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(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·추진 및 지원, 지역 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,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,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,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 등)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안 제5조~제6조는 재단의 기본재산 및 정관, 안 제7조~제10조는 임원, 임원의 직무, 이사회 구성 및 운영,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입니다.
- 재단의 운영재원, 수익사업, 사업연도에 대한사항은 안 제11조~제13조에
-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안 제14조~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.
- 재단의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·검사 및 감사와 소속공무원의 파견, 운영규정 제정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16조~ 제18조에 규정 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말씀드린

『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』에 대하여  
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5년 2월 일

관광진흥과장 이 선 희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**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**

제출자	고령군수 (관광진흥과장)
제출연월일	2025. 2. .

**법무팀 심사필**

#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5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## 1. 제정이유

- 가. 고령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
- 나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 목적, 설립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재단의 사업(안 제4조)
- 다. 재단의 기본재산 및 정관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임원, 임원의 직무, 이사회 구성 및 운영, 직원의 임면(안 제7조~제10조)
- 마. 재단의 운영재원 등, 수익사업, 사업연도(안 제11조~제13조)
- 바.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, 결산서의 제출(안 제14조~제15조)
- 사. 보고·검사 및 감사, 공무원의 파견, 운영규정(안 제16조~제18조)

## 3. 제정안 : 붙임과 같음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법규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민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규제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1. 10. ~ 1. 31. (의견서 별첨)

## 고령군 조례 제 호

###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령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고령문화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민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
2. 지역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·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
3. 지역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
4.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

5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·관리

6.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

7.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

8.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탁하는 사업
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령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과 명칭
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3.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

4.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5. 이사·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
7.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

8.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
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,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대표이사, 이사,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 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,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

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이사회 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0조(직원의 임면)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출연금 및 보조금
2. 재단사업 수익금
3.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
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, 군수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

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보고·검사 및 감사)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할 경우,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7조(공무원의 파견)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규정)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 비용)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 준비) ①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·확정할 수 있다.

② 군수가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**I. 비용추계 요약**

**1. 재정수반요인**

- 대외 경쟁력을 갖춘 고령군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고령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,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

**2. 비용추계의 전제**

-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
- 초기자본금 : 300백만원 (2026년/고령군 전액 출연)
- 세부내역

구분	비 목	산 정 기 준	비고
세입	운영수입	(’26년도 추정) 대가야생활촌,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수입	
세출	인건비	유사 문화관광재단 평균 인건비 기준, 1.74% 상승률 적용	
	운영비	인건비의 25% (※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설립기준)	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6년)	(2027년)	(2028년)	(2029년)	(2030년)	
세입	○시설운영 수입	296	399	509	529	548	2,281
	소계(a)	296	399	509	529	548	<b>2,281</b>
세출	○인건비	744	805	866	883	1,094	4,392
	○운영비	186	201	217	220	273	1,097
	소계(b)	930	1,006	1,083	1,103	1,367	<b>5,489</b>
□ 총 비용(a-b)		<b>△634</b>	<b>△607</b>	<b>△574</b>	<b>△574</b>	<b>△819</b>	<b>△3,208</b>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6년)	(2027년)	(2028년)	(2029년)	(2030년)	
국비		-	-	-	-	-	-
도비	일반회계	-	-	-	-	-	-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금	-	-	-	-	-	-
군비		634	607	574	574	819	3,208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634	607	574	574	819	3,208

### 5. 부대의견

-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3,208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, 실제 연도별 소요비용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

### 6. 작성자 : 관광진흥과 과장 이 선 희 (☎ 950-6650)

**□ 지역문화진흥법**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 - 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#### 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#### 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30조의4(파견근무)

-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

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 치 법 규 명 :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 고령군의회
- 주 소 :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
- 전 화 번 호 : 054-950-6408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<p>제1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○ <u>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</u> 군수에 제출하고, <u>군수는 예산안 제출 시 이를 고령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것을</u> 요청함.</p> <p>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.</p> <p>이는 군의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전절차라고 사료됨.</p>	

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관광진흥과	
연 락 처	054-950-6652